뉴욕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필립 캘더론 외 대 Public Partnerships LLC

사건 번호 25-cv-2320 (FB)(LKE)

집단소송 통지서

연방지방법원 승인

다른 언어 버전은 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사이에 뉴욕시,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 및/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소비자 주도 개인 활동지원 프로그램(CDPAP)의 일환으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주 전역 재정 중개기관인 Public Partnerships LLC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개인 활동지원인입니까?

귀하는 금전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집단소송 *캘더론 외 대 Public Partnerships LLC 사건*의 화해안을 예비 승인했습니다.

본 화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통지서를 읽거나 화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귀하는 자동으로 클래스의 구성원이 되며 화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제외 신청)하지 않는 한 법원의 결정이 귀하에게 적용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Public Partnerships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화해는 다른 청구와 더불어, 연방 임금 및 근로시간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2026년 6월 23일까지 발생한 Public Partnerships LLC에 대한 모든 청구를 면책합니다.** 귀하가 화해에서 옵트아웃하여 제외되지 않고 법원이 화해를 승인하는 경우, 귀하는 2026년 6월 23일까지의 FLSA 위반에 대해, FLSA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청구 가능한 배액배상금을 포함하여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www.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이 통지서에 대하여 3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3
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4
이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4
Public Partnerships LLC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이 소송에서 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5
법원이 원고들 또는 Public Partnerships LLC가 승소했다고 판단했습니까? 5
이 소송의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6
화해에 대해 알아보기 6
화해는 무엇을 제공합니까? 6
제가 화해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
제 지급금은 얼마입니까? 8
세금이 부과됩니까? 부과된다면 누가 납부합니까? 8
화해 클래스에 남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게 됩니까? 8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9
선택지를 어떻게 비교해야 합니까? 9
지급금 받기 10
지급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10
이 소송에서 저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10
이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제가 지급해야 합니까? 10
옵트아웃하기 11
본 화해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1
어떻게 옵트아웃합니까? 11
이의 제기하기 11
화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1
아무것도 하지 않기 12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2
주요 자료 12
추가 정보는 어떻게 얻습니까? 12

이 통지서에 대하여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당사 기록상 귀하는 영향을 받은 집단, 즉 "클래스"의 구성원으로 확인됩니다. 이 통지서는 집단소송 ***캘더론 외 대 Public Partnerships LLC 사건***의 화해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된 화해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사이 언제든지 뉴욕시,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 및/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통칭 "다운스테이트 개인 활동지원인")에서 소비자 주도 개인 활동지원 프로그램(CDPAP)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 전역 재정 중개기관인 Public Partnerships LLC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모든 전현직 개인 활동지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화해 합의서는 클래스 구성원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 설명하며, 클래스 구성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편으로 엽서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당사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귀하에게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여전히 클래스의 일원입니다. 화해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시거나, 화해 관리자(PublicPartnershipsSettlement@atticusadmin.com, 1-800-314-2601)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귀하가 클래스 구성원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메일, 문자 또는 엽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 화해 관리자에게 1-800-314-2601로 전화하십시오.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통지서를 읽고 화해 내용을 이해하신 후 귀하가 클래스 구성원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아래 중 무엇을 원하시는지 결정하십시오.

옵션	각 옵션에 대한 추가 정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받는 금액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사이에 재정 중개기관 Public Partnerships LLC에 등록되어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CDPAP에서 근무한 시간, (2) 등록 보너스 수령 자격이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했는지 여부, (3) 귀하의 보수 중 MEC 혜택에 배정된 금액, (4) 귀하의 보수 중 PTO에 배정된 금액 및 PTO 잔액에 남아 있는 금액. 귀하는 또한 본 화해로 해결되는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본 소송에서 제기된 청구 및 2026년 6월 23일까지의 기타 모든 관련 임금 및 근로시간 청구에 대해 Public Partnerships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면책에는 공정근로기준법, 뉴욕주 노동법, 뉴욕주 유급 안전병가법, 뉴욕시 유급 안전병가법, 재택 돌봄 종사자 임금 형평법에 따른 잠재적 청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가 포함됩니다. 아래 "화해 클래스에 남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게 됩니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변경된 운영 방식으로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4월 30일부로 Public Partnerships LLC는 직원에게 MEC 플랜 가입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 변경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화해에 대해 알아보기"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옵트아웃	옵트아웃하면 지급금을 받지 못하지만, Public Partnerships LLC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청구 권리는 유지하게 됩니다. 아래 "옵트아웃하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이의 제기	화해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법원에 알리십시오. 옵트아웃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화해가 승인되면 지급금은 받게 됩니다. 아래 "이의 제기하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화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선택이 귀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려면 계속 읽어 주십시오.

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이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개인 원고 4명, 필립 캘더론, 앨리슨 필즈, 파샤드 핀차시, 데이나 폴가("원고들" 또는 "클래스 대표")는 Public Partnerships LLC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제때에 정확한 요율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근로기준법과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또한 Public Partnerships LLC가 제공한 복리후생이 뉴욕주 재택 돌봄 종사자 임금 형평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클래스를 대표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소송의 제안된 화해안 전문과 기타 주요 문서는 다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Settlement-Documents

제안된 화해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사이 언제든지 뉴욕시,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 및/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통칭

"다운스테이트 개인 활동지원인")에서 CDPAP의 일환으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주 전역 재정 중개기관인 Public Partnerships LLC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모든 전현직 개인 활동지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Public Partnerships LLC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Public Partnerships LLC는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부인하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Public Partnerships LLC는 소송이 계속됨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고, 전국의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지원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본 화해에 합의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2026년 5월 1일, 원고들과 Public Partnerships LLC는 화해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양측 모두 추가 소송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을 피하고자 합니다.

본 화해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화해 클래스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이 사건을 판결하지 않았으며, 이 소송에서 누구든 특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집단소송 화해란 무엇입니까?

집단소송 화해란 사건을 해결하고 종결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화해를 통해 클래스 구성원에게 금전이 지급될 수 있고, 원고들이 클래스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승인되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Public Partnerships LLC가 승소하여 근로자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Public Partnerships LLC가 본 화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Katz Banks Kumin LLP와 The Legal Aid Society 소속 변호사들인 클래스 대리인단은 청구와 항변에 관한 사실관계 및 적용 법률을 조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중립적인 제3자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대등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본 화해에 이르렀습니다. 클래스 대표들과 클래스 대리인단은 제안된 화해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고 클래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이 원고들 또는 Public Partnerships LLC가 승소했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화해입니다. 이는 법원이 어느 당사자를 "승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이 사안을 해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의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법원은 화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정성 심리를 개최합니다. 최종 공정성 심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장소: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Courtroom 13B,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Y 11201

일시: 2026년 11월 10일 오전 11시.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제안된 화해에 관한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집단소송의 화해는 제안된 클래스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결정하므로, 화해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은 법원이 화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참석할 의무는 없으나, 원하시면 자비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본 사건에 출석 신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발언 허가를 요청하여 화해에 관한 의견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화해를 승인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화해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 화해는 무효가 되고 소송은 계속됩니다. 심리 날짜는 클래스 구성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심리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www.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을 방문하십시오.

화해에 대해 알아보기

화해는 무엇을 제공합니까?

본 화해는 다음을 제공하며, 이는 약 200,000명의 다운스테이트 개인 활동지원인에게 분배됩니다.

- 일반 손해배상금 4,050만 달러
- 이전에 최소필수보장(MEC) 플랜에 배정되었던 임금 형평 보상금 2,500만 달러
- 적립된 유급휴가 9,200만 달러(클래스 구성원의 PTO 잔액은 이 분배를 반영하여 정산됩니다)
- 450만 달러의 예비 기금, 그리고
- 2027년 4월 30일 이후 MEC 플랜에 배정된 미사용 자금 전액.

클래스에 대한 지급은 법원이 승인한 소송 비용, 클래스 대리인단 보수, 화해 관리 비용,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각 원고에 대한 봉사 보상금이 지급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Public Partnerships LLC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모든 금액을 나타낸 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본 화해의 일환으로 Public Partnerships LLC는 2026년 4월 30일부로 의무 MEC 플랜을 종료했으며, 클래스에 지급 가능한 모든 구제 금액이 지급되도록 원고들이 법회계 전문가와 함께 MEC 플랜 및 PTO 프로그램에 대한 회계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본 화해를 통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의 요약일 뿐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여기에 링크된 화해 합의서 전문을 참조하십시오.

제가 화해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메일, 문자 또는 엽서 통지를 받으셨다면, Public Partnerships LLC의 기록상 귀하는 화해 클래스의 구성원입니다. 화해 클래스에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사이 언제든지 뉴욕시,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 및/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통칭 "다운스테이트 개인 활동지원인")에서 CDPAP의 일환으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주 전역 재정 중개기관인 Public Partnerships LLC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모든 전현직 개인 활동지원인이 포함됩니다.

이메일, 문자 또는 엽서 통지를 받지 못하셨으나 귀하가 화해 클래스의 구성원이라고 생각되시면 화해 관리자(PublicPartnershipsSettlement@atticusadmin.com, 1-800-314-2601)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제 지급금은 얼마입니까?

지급 금액은 다음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사이에 재정 중개기관 Public Partnerships LLC에 등록되어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CDPAP에서 근무한 시간

(2) 등록 보너스 수령 자격이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했는지 여부

(3) 귀하의 보수 중 MEC 혜택에 배정된 금액, 그리고

(4) 귀하의 보수 중 PTO에 배정된 금액 및 PTO 잔액에 남아 있는 금액.

세금이 부과됩니까? 부과된다면 누가 납부합니까?

예. 화해 기금은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W2 소득과 귀하가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1099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1099 양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받으시는 모든 화해 지급금에 대한 세금은 귀하가 납부해야 합니다(연방법은 임금 외 손해배상금으로 2,000달러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사람에게만 이 양식을 발송하도록 요구합니다).

화해 금액과는 별도로 Public Partnerships LLC가 사용자 부담분 세금을 납부합니다.

피고 측과 클래스 대리인단 모두 본 화해를 통해 귀하에게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납세 의무에 관한 세무 및/또는 회계 자문은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화해 클래스에 남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게 됩니까?

법원이 본 화해를 승인하면,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가 없는 한 승인 명령이 등록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면, 적시에 적법하게 화해 클래스에서 옵트아웃하지 않은 모든 화해 클래스 구성원은 Public Partnerships LLC 및 모든 "Public Partnerships 면책 대상자"(화해 합의서에 정의된 대로)를 다음 청구로부터 면책하게 됩니다.

(1) 화해 클래스 또는 화해 집단을 대표하여 제기되었거나 수정 소장에 적시된 사실을 근거로 화해 클래스 또는 화해 집단을 대표하여 제기될 수 있었던 모든 청구, 그리고 (2) 화해 체결일까지의 모든 임금 및 근로시간 청구(통칭 "면책된 클래스 청구").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면책된 클래스 청구에는 화해 클래스 및 화해 집단이 화해 체결일 현재 보유했을 수 있는 임금, 보수,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가 혜택에 관한 모든 연방, 주, 지방 청구와 이에 관련된 벌금, 이자, 배액배상금,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및 경비 청구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정근로기준법(FLSA), 임금 형평법(WPA), 뉴욕주 노동법(NYLL), 뉴욕주 노동법 제195조, 유급 안전병가법(ESSTA), 유급 병가 및 안전휴가법(PSSLL), 계약

위반에 따른 모든 청구 및 관련 규정, 조례 또는 임금 명령, 제IV절에 명시된 MEC 또는 MEC 관련 지급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청구, 그리고 수정 소장에서 주장된 기타 모든 청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면책에는 2026년 6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근거한 청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클래스 구성원이 본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청구를 면책하고, 위에 명시된 대로 동일한 청구 및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6월 23일 사이의 모든 임금 및 근로시간 청구에 대해 향후 Public Partnerships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위 면책에 연방 임금 및 근로시간법인 FLSA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FLSA에 따른 모든 청구가 적용 가능한 뉴욕주 임금법에 따라 제기된 주법상 청구와 중복되므로 이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귀하가 화해에서 옵트아웃하지 않고 법원이 화해를 승인하는 경우, 귀하는 2026년 6월 23일까지의 FLSA 위반에 대해, FLSA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청구 가능한 배액배상금을 포함하여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면책은 향후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무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화해 합의서에 포함된 이 면책 조항의 전체 내용과 원고들의 수정 소장 및 기타 관련 문서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선택지를 어떻게 비교해야 합니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화해금을 받으시거나, 화해에서 옵트아웃하시거나, 화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각 선택지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옵트아웃**	**이의 제기**
제가 . . . 하는 경우 화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
제가 . . . 하는 경우 이 소송의 조건에 구속됩니까	예	아니요	예
제가 . . . 하는 경우 별도로 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제가 . . . 하는 경우 클래스 변호사가 저를 대리합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이의 제기에 관해서는)

지급금 받기

지급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Public Partnerships LLC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동안 Public Partnerships LLC가 급여를 계좌 이체로 지급했다면, 화해 지급금도 Public Partnerships LLC에 마지막으로 등록되어 있던 은행 계좌로 이체됩니다. Public Partnerships LLC로부터 급여를 수표로 받으셨다면, 화해 지급금도 수표로 지급됩니다.

주소나 지급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화해 관리자인 Atticus Administration에 1-800-314-2601로 연락하십시오.

지급금을 수표로 받기를 원하시고 Public Partnerships LLC에서 근무하신 이후 이사하셨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우편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수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저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을 담당하고 모든 클래스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할 클래스 대표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본 화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 개인들과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 Katz Banks Kumin LLP(휴 배런, 엠마 월터스, 아비 쿠민)와 The Legal Aid Society(리처드 블룸, 리베카 쿡맥, 마이클 딜러, B. 프랑코 올샨스키, 엘리자베스 세일러, 벨키스 가르시아, 리베카 안타)가 클래스 대리인단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들은 귀하를 대신하여 본 화해를 협상한 변호사들입니다.

별도의 변호사에게 대리를 받기를 원하시면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제가 지급해야 합니까?

변호사 보수와 비용은 화해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귀하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귀하의 변호사들은 업무 또는 사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어떠한 금전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승소하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맡은 데 따른 시간과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귀하의 변호사들은 본 화해의 최종 승인 절차에서 화해 기금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변호사 보수와 실비 상환, 그리고 화해 관리 비용을 승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보수와 비용은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화해 조건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변호사 보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변호사들은 클래스 대표들(필립 캘더론, 앨리슨 필즈, 파샤드 핀차시, 데이나 폴가)이 사건에 기울인 시간과 노력에 대해 각각 15,000달러의 봉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승인하면 봉사 보상금은 화해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옵트아웃하기

본 화해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옵트아웃하실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하시면 지급금을 받지 못하고 화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구속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된 화해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서는 제외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옵트아웃합니까?

화해에서 옵트아웃하시려면 여기에서 옵트아웃 양식을 작성하여 2026년 9월 19일까지 소인이 찍히도록 다음 주소의 화해 관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Public Partnerships Settlement
c/o Atticus Administration
PO Box 64053
St. Paul, MN 55164
1-800-314-2601

화해 웹사이트 www.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에 로그인하여 양식을 업로드하시거나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옵트아웃 양식을 보내시는 경우 2026년 9월 19일까지 접수되도록 보내셔야 합니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이의 제기하기

화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해의 어느 부분(변호사 보수 포함)에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옵트아웃은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화해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이의가 귀하 본인에게만 해당하는지, 클래스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클래스 전체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귀하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화해를 승인하거나 기각할 수만 있으며, 화해의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다음 요건을 갖춘 서한을 관리자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1) 2026년 9월 19일까지 소인이 찍힐 것
(2) 사건명과 사건 번호(캘더론 외 대 Public Partnerships LLC, 사건 번호 25-cv-2320 (FB)(LKE))를 포함할 것
(3)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할 것
(4) 이의 제기 사유를 명시할 것
(5)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최종 승인 심리에 출석할 예정인지 여부와 변호사의 성명을 명시할 것
(6) 귀하의 서명.

다음 주소로 서한을 우편 발송하십시오.

Public Partnerships Settlement
c/o Atticus Administration
PO Box 64053
St. Paul, MN 55164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지급금과 기타 구제를 받게 되며 화해와 그 "면책" 조항에 구속됩니다. 이는 **2026년 6월 23일까지의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Public Partnerships LLC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본 사건의 쟁점에 관해 Public Partnerships LLC(또는 관련 법인이나 개인)를 상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하거나 그 소송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본 화해가 승인될 경우 면책되는 청구와 대상자에 관한 전체 설명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자료

추가 정보는 어떻게 얻습니까?

이 통지서는 제안된 화해의 요약본입니다. 모든 조건이 포함된 화해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해 합의서 사본을 받거나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다음을 이용하십시오.

- 관리자에게 전화(1-800-314-2601)
- 사건 웹사이트 www.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 방문
- 온라인으로 법원 전자기록(PACER)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법원 서기과(아래 주소)를 방문.

자료	연락처 정보
사건 웹사이트	www.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
화해 관리자	Public Partnerships Settlement c/o Atticus Administration PO Box 64053 St. Paul, MN 55164 1-800-314-2601 PublicPartnershipsSettlement@atticusadmin.com
귀하의 변호사	**KATZ BANKS KUMIN LLP** 휴 배런 엠마 월터스 아비 쿠민 111 Broadway, Suite 1403 New York, NY 10006 (646) 759-4501 PPLSettlementInquiries@katzbanks.com **THE LEGAL AID SOCIETY** 리처드 블룸 리베카 쿡맥 마이클 딜러 B. 프랑코 올샨스키 엘리자베스 세일러 벨키스 가르시아 리베카 안타 49 Thomas Street, Fifth Floor New York, NY 10013 (212) 440-4300 civ_hq_employment@legal-aid.org
법원(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Y 11201